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9서식] <신설 2018. 10. 18.>

(앞 쪽)

제 호

기후에너지환경부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

1. 상호(명칭):

2.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
3. 사무실 소재지:

(전화번호:)

4. 기술인력 현황: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(지방)환경청장 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150g/㎡)

< 변경사항 >

일자	내용	확인

< 행정처분사항 >

일자	내용	확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150g/㎡)